

향토 지적재산의 권리와 방안

황종환(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I. 머리말

21세기는 각 민족이나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상품화되는 ‘문화산업의 세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국경개념이 없는 ‘지구촌시대’가 펼쳐져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글로벌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각 민족과 지역의 오랜 전통과 고유문화에서 소산된 문화적 자원이다.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뿌리내려 지방자치단체마다 내발적인 경제활성화의 묘안을 찾기 위해 분투 중에 있다. 그 묘안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 속에 내재된 독특한 문화양식과 고유기술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권리화하고 상품화하는 일이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는 누가 먼저 독특한 자국의 문화를 개발, 활용하여 차별화한 상품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귀에 익도록 들어오고 있다. 우리 것에 대한 우수성과 자부심을 자각하고 유지하자는 인식 확산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조상이 물려준 우리 전통문화자원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전통문화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방치해왔던 게 사실이다.

김치는 상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어온 대표적인 저장음식인데도 냄새나고 천한 음식으로 외면하여 왔다.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장류 역시 우리 곁에서 밀려나 그 자리를 서양의 인스턴트식품이 차지하여 우리의 입맛을 바꾸었다. 이러한 때 일본은 김치를 기무치, 된장을 미소, 청국장을 낫도라는 이름으로 종주국을 제치고 세계시장 선점에 나섰다. 하마터면 김치종주국의 자리도 내놓을 뻔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1996년 김치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치(kimchi)라는 이름으로 김치규격화를 제안해놓고 2001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옷칠기술은 어떤가? 옷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나는 것이 으뜸으로 꼽히고 있으며, 옷칠기술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 좋은 국산 옷원액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서 정제한 옷칠액을 다시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놀랄만한 일은 영한사전에서 저팬(Japan)이란 말을 찾아보면 '일본'이란 국명 이외에 '옷칠을 하다, 일본제 도자기'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일본이 옷칠에 대한 것도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공예기술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다. 우리는 옷칠의 용도를 목기(木器)나 나전칠기공예품에 칠을 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외국에서는 유화물감을 대신하여 영구적인 천연물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급자동차(벤츠), 잠수함, 해저광케이블, 만년필 커버, 라이타 등에까지 활용의 폭을 넓혀 산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의 시대적 양극화 가운데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은 우리의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관광자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 재단은 '전통문화자원'을 자산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1995년부터 '향토 지적재산'이란 용어를 개발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서울, 경기, 충북, 경북에 이어 현재는 충남지역의 조사·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권리화, 산업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재단이 추진해온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향토지적재산이란?

1. 향토지적재산의 개념

전통문화자원(Traditional culture resource)이란 말은 말 그대로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내의 자연환경이나 전통적인 생활속에서 형성되거나 파생된 정신문화 또는 생활문화의 소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문화자원이란 용어는 ‘향토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향토지적재산은 ‘우리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 산물 등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을 넓은 뜻으로 보면 여기에는 향토나 전통과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전통문화자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전통문화자원을 빠짐없이 개발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향토지적재산의 소재와 향토지적재산을 구분하기로 한다.

향토지적재산의 소재는 지역의 전통 및 문화와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전통문화자원은 향토지적재산의 소재와 그 범주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향토지적재산은 이러한 소재 중에서 1) 전래성 2) 특이성 3) 상품화 가능성의 요건을 갖춘 자산적인 것을 말한다.

즉, 향토지적재산은 각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 기술, 토산품 또는 자연환경 등에서 상품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좁은 뜻의 향토지적재산 선정요건 중 전래성은 다시 역사성과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성은 적어도 3세대(90년) 이상 우리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하며, 지역성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 전수된 것을 뜻한다.

둘째 요건인 특이성은 기술이나 원료 면에서 고유하거나 독특한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요건인 상품화 가능성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개발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거나, 소량생산이라도 고가판매가 가능해 상품으로서의 경제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 향토지적재산의 분류

향토지적재산은 산재하는 전통문화자원 중에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적,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지적활동의 내용이 향토자원을 변형 또는 가공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일 경우에는 유형의 향토지적재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의 향토지적재산은 식생활분야, 의생활분야, 주생활분야, 전통기술분야, 민간의료분야, 기타 등으로 나뉜다.

한편, 문화적, 예술적 욕구에 의해 향토자원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화한 것일 경우에는 무형의 향토지적재산으로 분류한다.

무형의 향토지적재산은 전래풍속, 민간설화, 민요, 지역축제 등이 있다.

이 밖에 토종식물, 토종동물, 자연생태환경 등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현재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든 향토자산을 향토지적재산의 소재로 분류하고 있다.

1) 유형의 향토지적재산

○ 식생활분야

- 김치, 간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
- 식혜, 수정과, 전통차 등 민속음료
- 문배주, 두견주, 법주 등 민속주
- 김치소스, 김치잼, 김치야채주스 등 가공식품 개발가능

○ 의생활분야

- 한산모시, 안동포 등
- 전통염색, 제직, 전통고유문양의 개발을 포함한 직물디자인, 패션 디자인, 봉제관련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화 가능

○ 주생활분야

- 온돌, 한지 등
- 온돌 난방시스템에 현대기술을 접목,
- 한지의 용도 확대 : 창호지, 벽지, 편지지, 색종이, 포장지, 화구용품, 인쇄용도

○ 전통기술분야

- 옷칠, 천연염료와 도자기·옹기제작기술 등을 현대감각과 접목 개발

2) 무형의 향토지적재산

○ 문화재를 활용한 상품 개발

- 문화재 및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개발

○ 민속놀이, 설화, 전래민요, 전설 등을 발굴, CD나 스토리상품 등으로 만들어 의장권·상표권을 확보하고 영상저작물로 제작

○ 문화유적, 유물, 인물, 자연경관 등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축제화 함

3) 향토지적재산의 소재

○ 민간전래동요 및 설화, 민화, 탈, 고분벽화

○ 특정지역의 독특한 인물,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동·식물

○ 산, 강 등 자연생태환경

III.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 권리의식의 부재와 제도의 미비

1) 권리의식의 부재

○ 전통고유기술 및 문화창작물을 공공재(公共財)로 인식

○ 현행제도하에서 권리화가 거의 불가능

2) 현행 제도상의 결함

○ 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또는 저작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전승된 형태 그대로는 권리화가 거의 불가능

○ 권리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기술개발이나 가공작업이 반드시 필요

○ 향토지적재산의 법적인 권리화 체계가 시급히 요구됨

2. 왜곡된 산업정책과 기업의 장기적 안목 결여

- 외국의 첨단기술의 도입이나 제품수입을 통한 판매차익에 주력
- 정부의 외국상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등 보호정책
- 첨단 아니면 비첨단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품질일류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전통고유기술의 현대화, 미래화 작업을 통한 독자적 기술 개발 및 상품 개발

3. 전통고유기술 및 문화창작업의 후진성과 배타성

- 도제제도(徒弟制度)하에서 기술 습득 : 기술전수가 천차만별이라서 품질의 완성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움, 전통고유기술 또는 문화상품의 저질생산, 남발우려
- 전통고유기술 및 문화창작업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로 고착된 사고 : 가내수공업적인 생산형태에서 탈피 어려움
- 일부 보호운동, 전통보존차원에 치중 : 실용화 여건조성 부족
- 기존의 교육, 언론,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 및 전환점 모색

4. 지원체제 미비

- 가내 수공업적인 영세규모 생산 : 제조원가 및 판매가가 높고 유통망 미확보
- 일본, 중국 등의 대량생산, 저가공세 : 생산의욕 상실
- 첨단 현대기술과의 접목 및 고유브랜드·디자인 개발 취약

IV.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및 산업화 사례

1. 향토지적재산 개발의 의미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지방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각 지역사회는 세계시장, 세계적 기업을 상대로 직접 경쟁 또는 상호협력을 해야하는 시대를 맞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는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활동하는 ‘힘있는 자’ 즉 선진국이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세계화로 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는 국경없는 지구촌시대를 맞아 삶의 양식이 획일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단순한 시장이나 경제적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유문화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 이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향토지적재산의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향토지적재산은 지방화와 세계화를 연결시키는 고리에 해당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지방화)이 가장 세계적인 것(세계화)’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고유기술이야말로 세계속에 우리 것을 빛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2. 향토지적재산의 세계화 전략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기술이야말로 세계 속에 우리 것을 빛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자산이다.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전통문화, 고유기술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문화빈곤현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 연구소 등에 새로운 연구·개발가능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기본은 향토지적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향토지적재산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해 왔던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활기찬 생명력을 지닌 실체로서 국내적으로는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에 대한 금지제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실용화, 생활화가 가능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홍보효과와 함께 우리 고유의 독특한 상품경쟁력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지적재산은 반드시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을 현재화 내지 미래화시킨 주체(개인, 법인 등)가 국내외의 권한없는 제3자로부터 보호되고 나아가 제3자의 모방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지적재산이라 하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여기서 향토지적재산이라 함은 상기와 같이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등록된 것 뿐 아니라 영업비밀, 기술상의 기법(技法, technical know-how) 등과 같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될 수 없는 것도 포괄한다.

3.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및 산업화 사례

○ 황토산품

<특성>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적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파장인 3.0~1,000미크론사이의 전자파)이 신체 내부에 전달될 때 생체의 에너지 순환과 생리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열, 보온성, 항습성 등이 입증되고 있음

<상품>

황토흙침대, 황토편인트, 황토편, 황토방, 황토벽돌, 황토온돌

○ 남서해안 개펄 화장품(충남 보령, 전남 신안)

<특성>

미용에 좋은 미네랄, 게르마늄, 알긴산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평균입자가 3배 정도 미세하고 특히, 화장품의 주 성분인 벤트나이트, 산화규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됨.

<상품>

신안머드화장품, 머드팩

- 토종향수 개발(제주, 전남구례 등)

<특성>

국내에서 자생하는 유채꽃(제주), 원추리꽃, 옥잠화(구례), 동양란, 백합, 쑥(서라벌), 저항나무, 소나무, 쑥향(설악) 등 토종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한 토종향수제품이 생산,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전남 진도에서는 유자원료를 정유·원액·유자씨기름 등으로 가공해 제품화할 예정이다

<상품>

제주향수, 노고단향수, 서라벌향수, 설악향수 등

- 지역의 특성 및 상징물 도형 심볼

청원군 초정약수, 보은군 정이품소나무, 제천군 박달재, 남해군 남해대교, 통영군 바다갈매기, 단양군 도담삼봉

- 공동브랜드

굴비골(영광군), 청자골 강진(강진군), 헬로전북(전북 농산물), 군위 팔공산(군위군), 영암월출(영암군), EQ2000(전북쌀), 안성마춤(안성군), 함평천지(함평군), 풍광수토(전남쌀), 치악산(원주), 남도미락(순천시), 으뜸Q(충남농산물), 소양강(춘천), 한려거북(여수시, 여천군)

- 고전인물 캐릭터

홍길동, 성춘향, 임궽정, 흥부와 놀부

- 생약성분 함유식물

방아풀(노화방지 물질인 로즈마린산 추출), 할미꽃(폐암, 대장암에 탁월), 섬오갈피(제2의 인삼), 만가닥버섯(연암축산원예전문대)

- 홍계곶데기의 키토산

<특성>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비만과 심혈관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

<상품>

키토산 쌀, 간암치료제, 건강보조식품, 키토산 화장품, 키토산 음료, 키토산 콩나물

○ 토종가축 및 특수사료를 먹인 한우

흑염소(백혈병 치료제), 강진 맥우(술먹인 한우), 양파한우(양파먹인 한우), 해로한우, 솔잎한우, 약초한우, 낭천닭

4. 특히 주목해야 할 우리 향토지적재산

○ 되찾은 우리 재산, 김치

-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맛김치, 포기김치, 백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 다종다양하게 넓혀 갈 수 있으며, 김치의 재료, 양념, 조리법에 따라 수 천 수 만의 맛을 낼 수 있으므로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의 김치(돌산 갓김치, 청주 물김치)를 창출, 지적재산화 가능
- 김치 관련 가공식품의 범위를 넓히고(김치비빔소스, 김치잼, 김치국수, 김치야채주스 등), 절입, 숙성, 포장과정 등의 과학적 표준화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특허 및 상표영역 확대 가능

○ 식혜, 수정과, 설록차 등 민속음료

- 우리의 민속음료인 식혜의 제조·공정 및 살균처리 기술과 포장용기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품화에 성공한 전례가 있으며, 이 식혜에 호박, 약초, 과일을 넣어 맛이나 기능을 달리하는 차별화가 가능
- 전통차 시장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수정과, 녹차, 인삼차, 유자차, 대추차, 울무차, 쌍화차, 생강차, 등글레차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상표 개발이 요망됨

○ 향기 높고 독특한 맛의 전통민속주

- 전통민속주에는 문배주, 안동소주, 전주이강주 등의 증류주 14가지, 이른 봄의 진달래꽃으로 담근 면천 두견주, 생연근과 연꽃잎으로 빛은 아산 연엽주 등의 청주·약주 25가지, 부산 산성막걸리와 평창 감가술 등 탁주, 막걸리 13가지 등 총 52가지가 있음
- 이와 같은 민속주와 관련 각 지역에 전수된 독특한 주류제조기술을 복원, 재현하는데 힘쓰며, 제조방법과 술병 등의 포장용기를 개발하

고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표를 선정해 특허,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음.

○ 이 시대의 최고의 영양식품 두부

- 콩으로 된 식품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음식이 두부다. 두부는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그 맛 또한 뛰어난 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 선물용 두부, 배달두부(강릉초당두부), 포장두부(풀무원), 두부정식, 맷돌두부, 두부버섯전골, 두부철판구이, 두부두루치기, 두부보쌈, 즉석두부, 전문점(두부애비), 햄두부, 어육두부

○ 없어서는 안될 조미료, 간장·된장·고추장

- 된장, 간장은 콩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효식품이다. 된장에는 항암물질과 항체생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간기능회복,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 찬마루 한식간장(풀무원), 햇살담은 조림간장(대상), 삼화마늘 간장(삼화간장), 양평장독 된장(양평지체농협), 황씨네 된장(충남 홍성 황연하씨), 가목리된장(강원도 정선 가목리 도연스님네 메주), 농진원 된장(경북 농촌진흥원), 인천 영종도 된장(우리농산물 단순가공협회), 순창고추장, 안동고추장, 영월고추장, 오복간장

○ 환경친화성 옷감, 전통고유문양 개발

-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산모시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마섬유의 의복화에 성공한 안동포는 고부가가치의 섬유기술개발로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다양한 상품화가 가능한 분야임
- 전통염색, 제직, 전통고유문양의 개발을 포함한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 봉제 관련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할 수 있음(투피스, 웨딩드레스, 전통의상, 인형, 수예품, 침구류, 인테리어용 등)

○ 은근과 끈기를 상징하는 온돌

- 전통은들은 피로를 없애 주고,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체리듬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함. 이러한 은둔난방 시스템에 현대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세계적인 상품개발이 가능함

○ 보존성이 뛰어난 전통한지

- 전통한지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나지만 아니라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및 흡수성이 좋아 모든 색상을 발현할 수 있으며, 방음성 및 방한성, 방온성도 매우 뛰어나
- 전통적인 표백법의 재현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전통한지를 벽지와 창호지, 브라인드 뿐 아니라 봉투와 편지지, 색종이, 포장지, 인쇄용지, 화구용품 등으로 응용하는 지적재산화 및 다양한 상품화의 모색이 필요함

○ 공예품에서 잠수함 바닥까지 신비의 옷칠

- 옷칠은 방열, 방수, 절연, 단열효과가 커서 외국에서는 잠수함이나 고급승용차, 만년필, 라이타 등의 칠에 사용되고 있으며, 접착력과 흡입력, 지속성이 뛰어나 유화물감 대용으로까지 확대, 이용되고 있음
- 옷칠의 채취, 정제, 건조, 도장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건조시간의 단축이나 자외선에 대한 내구성 증가 등 옷칠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옷칠의 용도를 확대, 국제경쟁력있는 고급상품으로 개발해야 함

○ 자연의 색깔을 재현하는 전통 천연염료

- 감꽃, 잇꽃, 쪽, 쪽두서니 등 식물에서 전통기법으로 추출한 천연염료는 복합색의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천연향, 방충·살균작용을 갖는 무공해 염료로서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음
- 천연염료가 지닌 약리작용을 이용하여 환자복, 노인용 및 아동용 의류, 혹은 내의류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천연염료 그 자체를 화장품이나 식용색소 등으로 확대, 이용가능함

○ 한국의 정신이 담긴 그릇 도자기와 옹기

-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의 제작기법을 오늘날 재현하고 있거

나 전통기법을 변형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 소재 개발, 원료 정제나 기타 부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꾀하면서, 현시대의 감각을 접목함으로써 시대성 있는 도자기를 개발함.
- 통기성과 정화능력이 뛰어난 ‘전통옹기’는 바이오용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기술임. 이러한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결합, 현대인에 맞게 변형, 가공, 개발하여 상품화(뚝배기, 향아리, 주전자, 접시, 찻잔, 붓통, 지통, 토우 등)

○ 신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토종 동식물

- 붉나무의 열매 오배자(폐암, 난소암, 피부암 등 암세포 성장을 억제 해 주는 물질 함유), 쥐눈이콩(열병과 고혈압에 효과), 칩소(정선, 평창의 얼룩무늬소), 개구린(토종옴개구리 피부로부터 추출·제조한 향생제) 등

V.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산업화

1.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방안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향토지적재산도 개발하여 산업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동안 전통문화와 고유기술에 대한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향토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업화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산업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유문화를 지켜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화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다. 권리화는 지적재산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가능한 권리화의 형태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있는데 이들이 지적재산권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향토지적재산에 현대적인 생산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한 경우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때에는 특허권으로, 종전에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한 정도일 때에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종전 제품에 기술적인 변화는 없으나 현대 감각에 맞는 색채나 모양 등 디자인을 변화시킨 경우에는 의장권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을 경우는 상표권으로, 기술에 대한 각종 기록이나 영상물 등은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화는 향토지적재산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권리화가 향토지적재산의 최종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목표는 산업화에 있다. 권리화는 산업화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이며, 타인, 타회사, 또는 외국의 권리침해를 막는 방패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향토지적재산이라 해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만 권리화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방법을 한산모시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림 1>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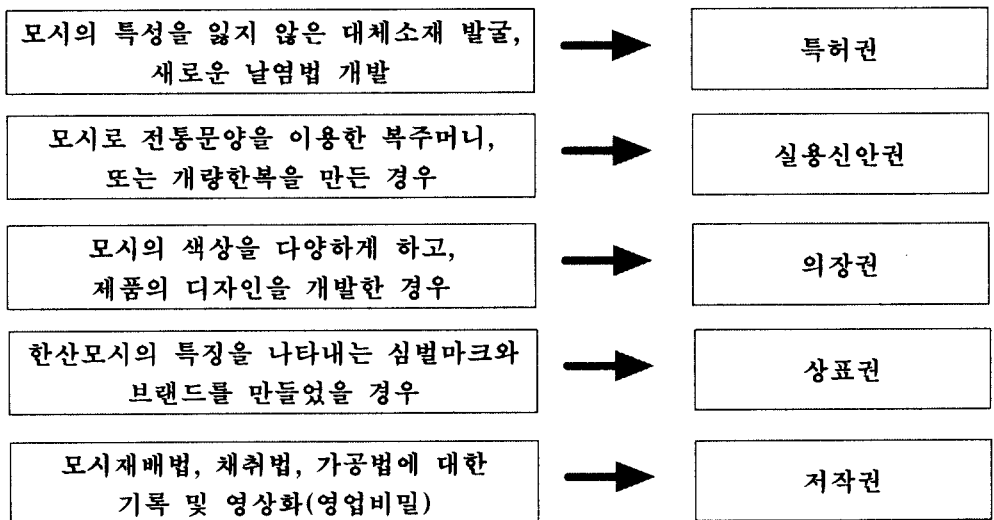


그림 1.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예시(모시)

2.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 방안

1) 개발전략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향기를 지니고 있거나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특화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고, 이러한 상품 차별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향토지적재산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됨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역시 관건이 되는 것은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 방안이다.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의 발굴과 권리화이며, 두번째는 산업화를 위한 사업체 선정과 선정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단계인 향토지적재산의 선정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향토지적재산의 인증제도(認證制度)다. 인증제도는 향토나 전통과 연관된 모든 전통문화자원 중에서 고부가가치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데 필요한 절차다. 이와 같은 인증제도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의 기준은 향토지적재산의 세가지 요건, 즉 전래성(지역성, 역사성), 특이성, 상품화 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되, 단순한 품질보다 지역성과 특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인증방법은 전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단계에서의 지원방식은 우선 순위에 따른 집중지원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발굴, 선정된 향토지적재산 중 산업화 우선순위가 높은 한 두 품목을 집중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끝나면 다음 순위 품목으로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에서는 무엇보다 이미지 효과가 중요한데 상품화를 촉발하는 지역 이미지 창출은 집중투자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단계별 추진전략

향토지적재산 산업화의 단계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사 및 발굴

향토지적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당지역안에 어떠한 향토지적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다. 조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향토지적재산의 구체적 품목과 그것이 상품화한 상황, 권리침해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상표출원현황, 향토상품 생산자의 권리확보내용, 고유기술상품화 현황, 상표 및 디자인 개발 내용, 지역특산품의 유통판매현황 등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조사하거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하는 방법 중 실정에 맞는 것을 택한다.

선정 및 권리화

선정은 조사, 발굴된 향토지적재산 중 우선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단계다. 인증제도에 의한 선정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결정으로 향토지적재산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계안에서 권리화가 가능한 품목은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이 있으며, 저작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등록절차 필요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확보된다. 권리화를 추진할 때에는 권리화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추후 분쟁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 선정 및 지원

향토지적재산의 권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의 공공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도단위 연구소와 국립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지원금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로 유출되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는 단점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후 지정입찰형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화하지 않는 향토지적재산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일반 업체에게 내준다. 이 때 고려할 사항은 지역연고사업체를 우선한 공개입찰, 개발비의 일부 보조 및 용자, 세제혜택 등이다. 또한 유통지원 측면에서는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업체와의 직거래알선, 제3섹터 등 판매법인의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

V. 맺는말

국제화와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세계시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자본의 운동에서 비롯된다. 범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의 단순한 시장이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주체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소재가 바로 전통문화자원이며, 여기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 향토지적재산이다.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중요한 인자가 바로 우리 선조들의 경험과 창의력이 밑받침된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기술, 그리고 이를 새롭게 재창조한 향토지적재산이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통문화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통문화자원은 지적재산권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기간(존속기간)이 지난 것이거나 보호를 받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그러한 자원의 보존이 이제까지 우리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고 변종 동식물이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민간전승물(folklore)이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전통문화자원의 지적재산권법상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로 한다.

기실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78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민간전승물 보호에 관한 지적재산권 표준 규정안을 제정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함께 전문가그룹을 조직하여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연 바 있고, 1985년에는 불법 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에 대한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한 표준 국내법 규정(WIPO/UNESC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을 제정하였다. 그 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민간전승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1996년에는 “민간전승물 표현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997년 태국 푸켓에서는 민간전승물 보호에 관한 세계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무대로 동식물이나 전통식품에 대한 지혜나 지식, 그리고 전통의술 등 이른바 전통지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전승물 보호 문제는 저작권이나 이와 유사한 접근법이라면, 전통지식은 다분히 특허 등 산업재산권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biodiversity rights)의 측면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제27조 3항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물 변종은 특허나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system) 또는 양자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WTO 발효 후 4년이 지나면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전통지식의 개념에서부터 보호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 각국의 관심이 국제규범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전승물 내지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이러한 전통유산에 대한 문화와 산업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통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이러한 전통유산을 보호한다면 그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부처간의 다툼이나 공 떠넘기기식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보호 방법은 전통유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결론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 방안은 먼저 국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검토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시행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내놓음으로써 국제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규범이 탄생할 경우 독자적인 제도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